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4. 11. 15 선고 2024가단106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15.

주 문

-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6,7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D은 2018. 12. 24.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만기일 2021. 12. 24.,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약정금리 23.5%, 연체금리 24%로 약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E은 2019.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20. 2. 14. D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원고는 D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전115422 대여금 사건으로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2020. 3. 5. D에 대하여 원고에게 10,387,462원 및 그중 8,985,448원에 대하여 2020.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결정을 하였다.

다. D의 어머니 망 F은 2020. 10. 28. 사망하였다. 피고, D을 비롯한 망 F의 상속인 5명은 같은 날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21. 5. 25. 접수 제8809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21. 5. 24.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2021. 5. 25. 접수 제8810호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D은 별도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원고에 대하여 2024. 4. 3. 현재까지 원금 8,985,448원, 인수 전 이자 1,124,327원, 인수 후 이자 4,685,234원 합계 14,795,009원의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E로부터 양수한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해행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무자력인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처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D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기하여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D의 지분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채권자의 위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D의 상속지분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G에게 이전해주었고,

달리 피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부동산의 원물반환은 법률상 이행 불능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D이 2024. 4. 3.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원리금 합계 14,795,009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2024. 2. 1. 33,5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부동산의 가액이 달라졌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 금액을 상속인 5명의 지분 비율로 나눈 6,700,000원(= 33,500,000원 ÷ 상속인 5명)이 H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피보전채권액 14,795,009원과 공동담보가액 6,7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공동담보가액 6,700,000원을 한도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7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진용